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로 ○○-○(○○동) 소재 ‘○○노래연습장’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이 사건 업소는 20○○. ○○. ○○. ○○:○○경 주류 반입 묵인행위(1차)로 인천○○○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음악산업법’ 이라 한다) 제22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10일 갈음 과징금 부과(50만원)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 ○○. ○○.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로 등록하고 운영을 해오다, 20○○. ○○. ○○.부터 20○○. ○○. ○○.까지는 이00과 3개월간 조건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따라서 사건 당시에는 이00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00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인은, 노래방 영업에 위반되는 “미성년자출입, 주류판매, 반입묵인 등” 을 포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주의사항을 고지하였고, 이를 임대차계약서 상의 특약사항 기록으로 남겨두는 등 주의의무를 준수한 사실이 있다.

나. 이00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 오던 상황에서, 사건 당일인 20○○. ○○.

○○. ○○:○○경 “주류반입 묵인” 으로 경찰관에게 적발이 된 것인데, 이00의 말에 의하면, 성인 3명이 노래만 부르고 가겠다고 하였고, 손님들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일일이 개인 소지품을 수색할 수 없어 별다른 의심없이 룸에 성인 3명을 입장시킨 후 2시간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자리를 배정해 주었을 뿐이다.

다. 주류를 반입했던 손님들도, 자신들로 인해 업소가 단속되자 미안함을 표시하며, 손님 중 1명이 이러한 사실을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하였으며, 이후 다른 1명도 자필로 그날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의 진술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수사권이 없는 업주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노래방에 입실하는 손님들을 외부적으로만 감시할 수 있고 손님들의 개인 소유 가방이나 기타 소지품 등 내부적으로는 검사항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경찰서의 적발 통보를 수신하고, 주류반입 묵인 처리 요령에 따라 손님과 월세입자의 일관된 진술서에 주목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와 함께 주류반입 묵인에 대한 의견을 요청을 하였다. 청구인과 월세입자는 손님의 가방을 일일이 수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류 반입의 판단은 영업자가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손님에게 주류 판매 금지 및 반입 불허에 대한 안내를 했다거나 객실을 드나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위를 살피는 등의 노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언급은 없었고, ‘별다른 의심없이 입장시켰다’ 고 기록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사건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손님의 진술서 및 월세입자의 자인서와 상반된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안주류가 제공된 현장사진이다. 손님이 몰래 반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주류 외에 과일과 마른안주 등이 접시에 담긴

채 제공된 현장 사진인데, 노래연습장은 주류의 판매뿐 아니라 보관마저 금지된 건전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영업주와 종업원이 주류 판매 및 반입 목인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결코 현장에서 발견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증거물이다. 위와 같이 제반 사항 전반을 고려한 피청구인은 해당 사건을 ○○○경찰서의 적발 통보와 같이 주류 반입 목인으로 인식하고 행정처분을 통지하게 된 것이다.

다. 이처럼,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에서는 주류반입 목인에 대한 노력이 나 주의를 기울인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손님이 외부에서 주류를 반입한 당시 영수증과 같은 구체적인 증명자료는 없고, 오직 손님과 당시 영업 중이던 월세사업자 진술서에 의지할 뿐이므로 적발 통보를 통해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파악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4.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로 ○○-○(○○동) 소재 ‘○○노래 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 ○○. ○○. ○○:○○경 손님 3명이 주류(소주 1병, 캔맥주 4병)를 반입한 것을 목인한 행위로 인천○○○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인천○○○경찰서장은 20○○. ○○. ○○.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 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음악산업법」 제22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20○○. ○○. ○○. ‘수사권이 없는 업주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손님들의 소지품 등 검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인 영업정지 10일 같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음악산업법」 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는 노래연습장업자는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목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2. 개별기준 항목 10)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목인 한 때, 1차위반시 ‘영업정지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목인한 경우 구청장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5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0. 00. 00. 00:00경 주류를 반입한 것을 묵인하다 인천000경찰서에 적발되었으며, 이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사건 당시에는 이00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00은 손님이 들어올 당시 주류반입 사실을 몰랐으며, 경찰 현장 단속 시 주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또한 수사권이 없는 업주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노래방에 입실하는 손님들의 소지품 등을 일일이 검사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류반입 묵인’이라 함은 주류반입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거나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주류반입 사실을 쉽게 발견하여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업소 내부에 주류가 반입되도록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적발 당시 사진에는 소주병, 맥주캔, 마른안주 등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업소에 주류가 반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노래연습장의 구조는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도록 하고있어, 이 사건 업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실 내부를 살펴보았으면 손님들의 주류반입 행위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 또는 이00은, 손님들이 객실에 진입하여 주류를 취식하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 주류를 반입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바, 청구인이 주류반입을 인지·제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조치를 방해하는 불가항력적인 요인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자리를 비워 청구인의 지인이 영업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객

관적 외형상으로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영업주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아울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자와 노래연습장업자 간에 영업질서를 유지함과 동시에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의 저해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그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과 오늘날 만연되어 가고 있는 노래연습장의 변칙·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커지고 있는 점,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그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